

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1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11. 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
- 나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춰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이사장, 이사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개정(안 제7조제2항, 안 제8조제1항, 안 제9조제2항)
- 나. 상임이사는 이사장이,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도록 개정하고, 상임이사 정수 관련 문구를 법 규정에 맞게 개정(안 제9조)
- 다.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)
- 라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춰 일부 문구 수정

□ 참고자료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

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후보추천위원회”를 “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.
- ② 이사(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)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.

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6조 중 “직원의 임·면”을 “직원의 임면”으로 하고, “임·면한다”를 “임면한다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제6호 중 “제1호 내지 제5호”를 “제1호부터 제5호까지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 한다.

제20조 제목 중 “계리” 를 “회계처리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계리” 를 “회계처리” 로 한다.

제30조 중 “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” 을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” 으
로 한다.

제5조제1항, 제17조제1항, 제26조제2항 중 “각호” 를 각각 “각 호” 로,
“기타” 를 각각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정관)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<u>각호</u>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12. (생략)</p> <p>13. <u>기타</u> 필요한 사항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임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이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<u>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 다만,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8조(이사장)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<u>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후보추천위원회</u>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5조(정관) ① ----- -- <u>각 호</u>-----</p> <p>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<u>그 밖에</u>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임기는 <u>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</u> ----- -----</p> <p>제8조(이사장) ① ----- ----- 「<u>지방공기업법 시행령</u>」 제56조의3 제1항에 따른 <u>임원추천위원회</u>----- 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이사) ① <u>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</u></p> <p>1. <u>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2인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<u>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. 다만 정관에서 규정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2조(이사회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u></p> <p>④ <u>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<u>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(생략)</p>	<p>제9조(이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.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이사(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)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이사회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6조(직원의 임·면)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임·면한다.</p>	<p>제16조(직원의 임면) ----- ----- --- 임면한다.</p>
<p>제17조(사업) ① 공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탁 대행한다. 이 경우 공단은 위탁자와 위탁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생략) 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6.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등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17조(사업) ① ----- 각 호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그 밖에 -----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----- -----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(생략) <p>② (생략)</p>	<p>제18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 ----- ----- ----- 각 호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(현행과 같음)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0조(계리의 원칙) 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.</p> <p>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.</p>	<p>제20조(회계처리의 원칙) ①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 회계처리한다.</p> <p>② ----- ----- 회계처리 ----- ----- 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6조(감독) ① (생략)</p> <p>②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</p> <p>제30조(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·관리)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에 의하여 시의 실·과·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.</p>	<p>제26조(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각 호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그 밖에 -----</p> <p>-----</p> <p>제30조(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·관리)</p> <p>-----</p> <p>----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p>□ 「지방공기업법」</p> <p>제58조 (임원의 임면 등 <개정 2006.10.4>)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임원추천위원회"라 한다)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9.4.1></p> <p>⑥ 이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.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4.1></p> <p>제59조 (임기 및 직무) ② 공사의 사장·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<신설 2009.4.1></p> <p>제62조 (이사회)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.</p> <p>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</p> <p>③이사회는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□ 「지방공기업법시행령」</p> <p>제55조 (이사)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.</p> <p>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.</p> <p>제56조의3 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<개정 2009.9.21>)</p> <p>①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 <신설 2009.9.21>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